

고교-대학연계교육과정운영규정

2023.04.04.제정

<학사관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와 고교간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‘연계교육과정’이라 함은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따라 동명대학교(이하 ‘대학교’라 한다.)와 고교간의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② ‘협력 고교’라 함은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) ①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학과의 경우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[별지 제1호 서식]로 고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②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 이후 대학교의 학과 개편 및 교과과정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교육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(연계교육과정 교과목 편성) ① 협력 고교는 대학교의 참여 학과와 협의하여 전공 교과목과 연계된 연계교과목을 6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.
② 연계교과목은 양교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개발한다.

제5조(연계교육과정 교과목 이수) ① 협력 고교는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수신청자 명단 [별지 제2호 서식]과 연계교육과정 이수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대학교 입학홍보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개설된 연계교과목 중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교육시간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교수 및 학생교류)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교수·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.
② 참여 학과 교수는 연계교육과정의 수업에 상호 참여할 수 있다.
③ 협력 고교는 연계교육과정 학생들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기 연계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상호협력)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협력 고교에서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청 시 대학교에서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임차버스, 중식, 실습재료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신입학 지원 자격) ① 대학교의 연계교육과정 신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
2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3.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

제9조(전형 및 선발) ① 전형일정은 대학교의 신입학 전형에 따른다.

②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학과의 통·폐합 및 폐과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계교육운영협의회를 거쳐 유사 학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해당 협력 고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계교과목 이수학점 인정) ① 연계교육 입학생에 대하여 연계교과목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연계교육 입학생은 연계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[별지 제4호 서식]을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)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1. 연계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연계교육과정 학과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
 3. 연계교육과정 학과 통·폐합 또는 폐과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유사학과에 관한 사항
 4. 연계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의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입학홍보처장,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연계교육과정 운영협의회)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는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1. 연계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
 2.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
 3. 연계교육과정 신입학 전형방법
 4.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
 5. 교수·학생의 교류 및 협력
 6.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
 7. 그 밖의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협의회는 대학교 참여 학과의 전임교원과 협력 고교에서 추천한 교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대학교 참여 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.
- ③ 협의회의 소관업무는 대학교의 참여 학과에서 관장하며,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에 따른 제반비용은 대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계획) 연계교육은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장학금 지급) ① 양교 간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의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장학금 지급 또는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세부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는 대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6조(그 밖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

동명대학교 ○○○학과와 ○○○고등학교 ○○○학과는 양교 간에 협약한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협약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.

1. 시행년도 : ○○○○학년도 입학생부터
2. 연계교과목 개설 : 동명대학교 ○○○학과는 ○○○고등학교 ○○○학과와 전공교과목과 연계 가능한 연계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.

동명대학교				○○○고등학교			
구분	연계 교과목명	학점	비고	구분	연계 교과목명	시수	비고

3. 지원자격 : 고교 재학 중 연계교육과정 이수신청서 제출과 연계교과목 중 15시수 이상을 이수하고, 학업성적 누계 백분율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.
4. 전형방법은 대학교의 모집인원, 지원자격 등을 따르되, 학부(과)의 사정에 따라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.
5. 연계교육이수자 특전(변경 가능)
 - 가. 연계교육 입학생에 대하여 연계교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 - 나. 동명대학교 입학생으로 기숙사 입관 시 기숙사비를 할인하여 입관을 지원할 수 있다.
6. 그 밖의 사항
 - 가. 대학교에서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력고교는 제공한다.
 - 나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관련위원회에서 정한다.
 - 다.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, 양교의 서면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20 년 월 일

동명대학교 총장

○○○교장

